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12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9.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03.

[무홀]

정 보 공 개 서

무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무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40-5,1층(고등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 : 가맹본부의 대표팩스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예상매출액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용브랜드	주 소				
무홀	무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40-5,1층(고등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3.07.01	진건	 (비공개)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404-37-0140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무홀)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무홀	-
상 호	무홀 OO점	-
상표(서비스표)		-
광 고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105,845	-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름	현 직 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진건	대표	2023.07.01.~현재	대표	경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 근	비 상 근	
2023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	------	-----------	-------------	-----	------

		여부(일자)		(등록신청자)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 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 3)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무홀]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

※ 직영점 시작일 : 2023년 7월 1일

2. [무홀] 브랜드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무홀	무홀	진건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40-5,1층(고등동)]

3. [무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무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빵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¹⁾	연말	증감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1) 명의변경이라 함은 권리자가 변경되어 가맹계약서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것으로 제3자간의 명의변경, 가족 및 친인척간의 명의변경을 모두 포함합니다.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무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무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 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 맹 점	
합 계	-	-	-	-	-
광고	-	-	-	-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예정으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무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계약체결 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 중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입비	4,400	계약체결일	가맹계약서 제9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 전 교육비	2,20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후에는 반환불가

2) 계약이행보증금의 내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물류대금 미지급, 본사 공급 물품 파손 등 - 계약 종료 후 조치의무 미이행	계약해지 시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귀하는 다음의 예치가맹금을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7,600
가입비	4,400
개점 전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1,000(부가세 없음)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으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 고
총 계	-	26,355		-	-	약 33m ² (약 10평)
인테리어	요청시 가맹본부	17,600	1,760	협의	미시공시	*33m ² 초과시 3.3m ² 당 1,760 추가부담
커피머신	가맹본부	6,005	해당없음	협의	미공급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추가부담
빵기계	가맹본부	550	해당없음	협의	미공급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추가부담
집기	요청시 가맹본부	2,200	해당없음	협의	미공급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추가부담

- ① 귀하는 가맹점설비²⁾ 등(추가공사, 리뉴얼 공사 포함)의 공급을 당사에 의뢰하거나 귀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가맹점설비 등(추가공사, 리뉴얼 공사 포함)의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동등한 정도의 시공수준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가맹점설비 등(추가공사, 리뉴얼 공사 포함)의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당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하에게 설계도면 제공 및 공사의 감리를 진행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설계도면 제공비 일금이백이십만원(₩2,200,000)(부가세 포함)과 공사감리비 3.3m²당 일금일십육만오천원(₩165,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 귀하는 별도의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③ 귀하가 당사에 내(요청시설)·외부의 추가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위 표의 금액 외 추가 비용이 가산되며, 각 현장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내부의 3.3m²당 면적이 상승되는 추가공사는 당사와 공사범위를 확정 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귀하의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그 밖의 영업신고, 어닝, 냉난방기, 철거비용, 익스테리어,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 실외 배관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포스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⑥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5%의 지연이자³⁾가 가산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2) "가맹점설비"라 함은 "을"의 가맹점 인테리어, 주방기기, 실내·외 장식물, 집기·비품 등을 말합니다.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입지 선정에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 선정의 최종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최종 의사 결정	1) 귀하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귀하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 할 경우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귀하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귀하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귀하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귀하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귀하의 최종 결정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무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 열 티	가맹본부	매월 220	매월 1일	계약해지	경과기간	-
가맹점설비 ³⁾ 리뉴얼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 한 지원 -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 발생채권 순으로 상계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 광고비의 50%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각 매장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여 청구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 한 지원 - 참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실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 당사는 다음 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커피업종 모범거래기준 제3장 매장 인테리어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3장 매장 인테리어

제5조(기본 원칙) 매장 리뉴얼과 관련하여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리뉴얼이 행해졌다면 해당 리뉴얼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리뉴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때 점포 전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리뉴얼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비용 지원) ①매장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인테리어공사 및 간판교체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한다.

② 매장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되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인테리어공사 및 간판교체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한다.

③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8년(리뉴얼이 행해졌다면 해당 리뉴얼이 완료된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가맹점사업자가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여부 및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금지행위) ①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리뉴얼이 행해진 경우에는 해당 리뉴얼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뉴얼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3) "가맹점설비"라 함은 "을"의 매장 인테리어, 주방기기, 실내·외 장식물, 집기·비품 등을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리뉴얼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리뉴얼 비용은 전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2.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리뉴얼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사업자를 통해 매장 인테리어(신규 및 리뉴얼을 모두 포함한다)를 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매장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하게 수취하는 방식 등으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매장 인테리어를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설비 등(추가공사, 리뉴얼 공사 포함)의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도급 금액 정보 및 도급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도급 금액 정보 또는 도급계약서 제공시 회계기준에 따라 무홀의 총괄 운영비용 등의 추정 금액을 포함하여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추정 금액은 회계기준의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조 제5항에 따른 도급 금액 정보를 도면 브리핑(인테리어 시설 도면 및 견적을 설명하는 때) 시 제공하기로 하며, 도급계약서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본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당사는 23년 말 가맹점이 없어 차액가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판매량을 조사하여 사용량과 발주량 비교	매월1회	가맹사업본부
회계처리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포스자료점검)	매월 1회	가맹사업본부
손익 관리	가맹점 고정비와 변동비를 계산하여 최적의 손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사	매월 1회	브리핑 자료작성
판매량 조사	가맹점 판매량을 조사하여 매장의 특성화를 이해	매월 1회	가맹사업본부

레시피 관리	슈퍼바이저의 운영으로 매장의 균일한 레시피 관리	최소 주1회	가맹사업본부 매장관리팀
기물 관리	적절한 기기 및 비품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조사	최소 주1회	가맹사업본부
행사 관리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에 관해 적극적 동참 유도	행사시 상시	포스터,POP,Y배너등
위생 관리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최소 주1회	클린데이 실시 유통기한 파일점검 원산지 표시 등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무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로열티입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간판,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설비⁴⁾와 메뉴판 등을 철거하고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무상대여 품목 등은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가 계약종료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당사는 당사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당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귀하는 전화번호 등록 및 안내문구, 인터넷상의 브랜드 명칭사용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설비"라 함은 "을"의 가맹점 인테리어, 주방기기, 실내·외 장식물, 집기·비품 등을 말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무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없어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무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당사는 [무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 당사가 [무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물품대금지급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COFFEE, LATTE,,ADE,SMOOTHE,HERB TEA,JUICE,붕어빵,수제모닝빵 세트,계란빵,호두과자,SET메뉴 *상세품목은 아래 3)가맹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상의 리스트 참조	운영매뉴얼 위반 사용, 제조, 판매 등 당사 미승인 상품의 사용, 진열, 판매 등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당사 승인 외의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귀하와 협의 하여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제3자,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타인 또는 제3자에게 판매용도 외 제공을 금지함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소매가격(이벤트, 행사 등의 판촉시 진행되는 할인 가격 제외)을 고려하여 상품·용역 등의 판매가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메뉴명	단위	가격
COFFEE	아메리카노	CUP	3,500
	카페라떼	CUP	4,000
	바닐라라떼	CUP	4,500
	헤이즐넛라떼	CUP	4,500
	카라멜마끼아또	CUP	4,500
	연유라떼	CUP	4,500
	아인슈페너	CUP	5,000
	카페모카	CUP	4,500
	히말라야소금커피	CUP	5,500
LATTE	딸기라떼	CUP	5,000
	초코라떼	CUP	4,500
	고구마라떼	CUP	4,500
	바밤바라떼	CUP	4,500
	미숫가루라떼	CUP	4,500
	썬라떼	CUP	4,500
	메론라떼	CUP	4,500
	제주 그린티라떼	CUP	4,500
	자판기우유	CUP	4,000
	+밀크폼 추가	-	500
ADE	청사과에이드	CUP	4,500
	청포도에이드	CUP	4,500
	자몽에이드	CUP	4,500
	한라봉에이드	CUP	4,500
	블루레몬에이드	CUP	4,500
	패션후르츠에이드	CUP	4,500
	아이스티	CUP	4,000
SMOOTHE	플레인요거트	CUP	5,500
	딸기스무디	CUP	5,500
	망고스무디	CUP	5,500
HERB TEA	캐모마일	CUP	4,000
	페퍼민트	CUP	4,000
	루이보스	CUP	4,000
	얼그레이	CUP	4,000
JUICE	수박생과일주스	CUP	5,000
붕어빵	팥	6EA	3,500
		12EA	6,000
	슈크림	6EA	3,500
		12EA	6,000
	고구마	6EA	4,000
		12EA	6,500
	고구마피자	6EA	4,000
		12EA	6,500
	누텔라	6EA	4,000
		12EA	6,500
	카야빵	6EA	4,000

		12EA	6,500
	피자	6EA	4,000
		12EA	6,500
	반반 (2가지맛 선택)	12EA	6,900
수제모닝빵 세트	단호박	2EA	4,500
	포테이토	2EA	4,500
	에그폭탄	2EA	4,500
	참치마요	2EA	4,500
계란빵	오리지널	2EA	3,900
	햄치즈	2EA	4,900
	피자	2EA	4,900
	콘치즈	2EA	4,900
	호박품은	2EA	4,900
	불닭치즈	2EA	4,900
호두과자	팥	6EA	4,000
	슈크림	6EA	4,000
	치즈	6EA	4,500
	누텔라	6EA	4,500
	고구마	6EA	4,500
	고구마피자	6EA	4,500
	카야	6EA	4,500
	땅콩빵	12EA	6,000
SET	붕어빵 (팥 OR 슈크림) 6EA+ 아메리카노 (HOT OR ICE)	좌동	6,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커피업종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에 따라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디저트, 커피등 음료를 하는 가맹사업	무홀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	-----

설정기준	가맹점 간 거리기준(직선거리 1.5km)
예외사항	①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폐점 후 재 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②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1.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하루 동안 기존 가맹점 매장 앞을 도보로 지나가는 총 인구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단, 현재 1.5km이내 인근가맹점이 이미 출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출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대형쇼핑몰, 대형오피스건물, 대학교 등 특수상권내에 출점(Shop-in-Shop형태) 하는 경우 4. 주거지역으로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설정방법	가맹점과 가맹점 간 직선거리 1.5km 단, 가맹점과 가맹점 간 직선거리는 가맹점이 입점된 건물 외곽 기준이 아니라 가맹점의 외곽(점포 면적의 끝)을 기준으로 잴 거리를 말합니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무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해당없음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무홀]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2년 및 갱신/재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8조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8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3항
○ [무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8조 3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영업지역]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개점준비]를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 교육과 비용부담]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설비 공사]를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설비 사후관리 및 하자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경영지도]를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영업비밀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광고, 판촉]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고객 컴플레인]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공급품목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상품의 공급중단]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휴업]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1항
○ 운영 관리 방침과 현저하게 다르게 운영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29조 1항
○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경우	29조 1항
○ 계약기간중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입한 상품금액이 그 전년도 1 년간 매입실적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시	29조 1항
○ 기타 가맹계약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9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9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9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법규와 건전한 상 관례에 따른다.	33조
○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법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33조

※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 조 정 절 차	동 의 절 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일의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대리행사 및 업무위탁은 불가능합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그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와 경합하는 다른 동종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함께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계약 제19조).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일반인에게 커피등의 음료류를 제 공하면서 베이커리 메뉴를 판매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무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시-22시 단,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가능	연속하여 3일이상 휴업할 수 없으며,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일로부터 10일전에 갑에게 서면승인 득하여야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자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 독 절 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관리내역 점검→상담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완료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가맹점 관리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무홀]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 광고·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귀하와 부담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	-------	------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물 광고	행사에 따라 달라짐	-	제작비용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광고,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지만 본사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영업비밀이라 함은 귀하가 당사와 최초 가맹계약을 통해 숙지, 이해 또는 습득한 당사의 매뉴얼, 상표권, 영업정보, 도급금액 정보 및 도급계약서 등 각종 업무상 사항을 포함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 및 가맹점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③ 귀하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귀하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귀하가 계약종료 이후 계약종료의 의무 및 조치 및 영업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는 귀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해 당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당사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당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그 침해가 중지되는 날까지 1일당 일금일십만원(₩100,000)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귀하의 형사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3㎡(약10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4.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4) 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예상기간이며,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외부 기후 환경적인 요인, 인·허가 사항의 요인, 수입원자재 수급의 지연 및 재고소진의 요인 등)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관	분쟁 해결 절차	비 고
법무팀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관계 조사(15일 내외) → 위원회 개최 및 결정	문의 : 02-3438-1404

※ 위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

재를 제안할 수 있으며, 중재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 가맹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무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무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개점 전 교육	메뉴 및 관리 교육	커피/음료/디저트 메뉴 교육 및 관리	이론 및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음료교육	음료 및 메뉴 교육			
	디저트 교육	베이커리 제조 관리 교육			
	매장관리 및 운영교육	매장운영 및 운영관리 교육			
	실습교육	직영점 또는 가맹점	실습		
보수교육		신메뉴 제조 및 관리세팅교육	이론/실습	신메뉴 출시시	보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무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 용(단위: 천원)
개점 전 교육	2주 이내(1일 8시간 기준, 이론 5일, 실습 6일)	2,200(부가세 포함)
보수교육	교육에 따라 다름	100% 부담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40-5,1층(고등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5,84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